

#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50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3. 1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3. 11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3. 18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제안이유

- 상죽암군립공원내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공룡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공룡전시관의 관람요금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사위장 시설에 대하여도 사용료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공원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코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청소년과 일반인의 용어의 정의 변경(안 제3조)
- 공룡전시관 관람료의 징수기준 및 서식에 관한사항(안 별표3, 별지제2호)
- 사위장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 및 서식에 관한사항(안 별표3, 별지 제2호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(24세미만)을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등에 맞게(19세미만) 조정하는 사항과 공룡전시관 준공에 따른 개장대비 및 사위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주차장 사용료 및 샤워장 시설 사용료는 조례에 규정하여 또 민간에게 위탁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인지?
- 답 : 공원이 완전하게 개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사무실 등이 없는 관계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- 문 : 영화마을 야외자동차 극장에서 야간에 영화를 하면서 일반 관람객에 주차를 못하게 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?
- 답 : 아직까지 그런 부분의 민원은 없었으며,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- 문 : 공룡전시관 관람료가 일반이 3,000원이며, 관람 소요시간에 비해 너무 비싼 편이 아닌지?
- 답 : 공원 및 공룡전시관에 대하여 경영수익 분석을 통한 원가 계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, 영상입체 영화료 등을 포함했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.
- 문 : 공룡전시관을 통해서 관광객이 고성을 많이 찾도록 해야지 전시관 사용료 문제 등으로 관광객이 오히려 고성을 외면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
- 답 : 인근지역 등과 균형을 맞추어 요금을 책정하였으며, 그런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4. 3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